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10298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증인가 천우

담당변호사 이정호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

담당변호사 이정수

변론 종결2024. 10. 22.

판결 선고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들 사이에 2021. 7. 22. 체결된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2022. 6. 13. 체결된

공사도급변경계약을 각 취소한다.

2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, 원고와

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

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B'라 한다)는 춘천시 D 외 2필지 지상에 생활형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 한다)의 시행사이다.

나.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'피고 C'이라 한다)는 2019. 6. 17. 피고 B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금액을 17,375,000,000원(부가세 별도, 이하 같다)으로 정해 공사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 공사도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.

다. 피고 B는 2020. 2. 20.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(이하 'E'이라 한다)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.

라. 원고는 2020. 2. 20. 피고 B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350,000,000원을 투자하고 투자기간 종료일(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준공이 완료되고 대출채권 및 공사비 지급이 완료되는 날)에 투자금과 투자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35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마. 이후 피고들과 E은 2020. 3. 11.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인 지위를 E으로 승계하는 공사도급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위 공사도급승계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

제4조(공사범위 및 계약기간)

① 피고 C은 원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 B와 대출금융기관 등 사이에 2020. 2. 20.자로 체결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의 최초인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사업부지 공사에 착수하고 대출의 최초인출일로부터 25개월 이내에 본 사업부지의 공사를 포함하여 건축(사업계획)허가(승인)조건상의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, 본 공사의 공기가 중도금 수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피고 C은 근로시간 단축(주52시간),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공사도급 금액 및 공사기간을 결정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의 증액 및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.

바.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25,000,000,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추가차입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이에 2021. 1. 29. 대주들과 E,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.

○ 대주들은 본건 사업의 차질 없는 속행과 완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 종료 시까지 유예하기로 한다.

○ 피고 B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피고 B가 갖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(단, 수익 수취 권한 제외)을 시공사인 피고 C에 위임하고(법인인감 관리 및 날인행위 포함), 이 사건 사업 정산 시까지 위 권한 내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.

사. 피고들은 물가변동 등을 사유로 하여 2021. 7. 22.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도급금액을 17,375,000,000원에서 18,350,000,000원으로 970,000,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, 이어 2022. 6. 13. 위 공사도급금액 18,350,000,000원을 18,568,000,000원으로 218,000,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위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을 '이 사건 각 공사도급변경계약'이라 한다).

아.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변경계약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있었고, F 주식회사 등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등 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이 사건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은 채무자인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

해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갑 제4호증, 을나 제5,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공사도급변경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갑 제7 내지 9, 11, 14,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들과 E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E이 승계하도록 하면서 수급인인 피고 C이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합의한 사실, 피고들은 E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 B는 피고 C과 통정하여 법인의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,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고유의 업무 진행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업무가 가중되는 등 정신적(무형적)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. 이에 원고는 우선 그중 일부인 20,000,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.

나. 판단

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,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태균